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찬성자:42명)

나. 의안번호 : 제 1999 호

다. 발의일자 : 2024. 8. 12.

라. 회부일자 : 2024. 8. 14.

## 2.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 및 관라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2024. 8. 20.~8. 24.)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8조 ~ 제10조 (생략)</p>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p> <p><u>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p>1. <u>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u></p> <p>2. <u>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u></p> <p>② <u>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 먼저, 제한행위 신설을 규정한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 제17조의3<sup>1)</sup>은
  -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②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 ③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sup>2)</sup>에서
  - ① 흡연·음주 행위,
  - ②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③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④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

1)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⑥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바, 법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됨.
- 참고로,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는 “흡연·음주·가무·방뇨”,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의 훼손”,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의 행위를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붙임〕 참조),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자치구 조례에서 제한한 행위에 추가적으로 동 개정안의 제한행위가 공통 적용되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은 관리

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 법 제31조제2항제3호<sup>3)</sup>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조치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데,
- 상기와 같이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만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과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

3)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개정안과 같이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 그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안 제8조제2항)을 새로이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관계 상위법령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조치권한에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제11조의3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p><u>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u></p> <p><u>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u></p> <p><u>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해·위</u></p>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p> <p>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p>

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  
치를 할 수 있다.

[붙임] 서울특별시 20개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제한 사항

## 서울특별시 20개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제한 사항

연번	자치구	행위 제한
1	강남구	<p><b>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li> <li>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lt;개정 2023.11.3.&gt;</li> <li>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2	강동구	<p><b>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li> <li>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3	강북구	<p><b>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li> </ol>

		<p>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p> <p>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p>
4	강서구	<p><b>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li> </ol>
5	광진구	<p><b>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행위</li> <li>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li> <li>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li> </ol>
6	구로구	<p><b>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li> </ol>
7	금천구	<p><b>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li> <li>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li> </ol>

		<p>수거 등 방치 행위</p> <p>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p> <p>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p> <p>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p> <p>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p>
8	노원구	<p><b>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p> <p>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p> <p>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p> <p>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p> <p>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p> <p>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p>
9	동대문구	<p><b>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p> <p>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p> <p>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p> <p>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p> <p>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p> <p>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p>
10	동작구	<p><b>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p> <p>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p> <p>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p> <p>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p> <p>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p> <p>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p>

11	마포구	<p><b>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개정 2018.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lt;개정 2022.10.20&gt;</li> <li>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li> <li>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li> <li>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lt;신설 2022.10.20&gt;</li> <li>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lt;신설 2022.10.20&gt;</li> <li>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lt;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20&gt;</li> </ol>
12	서대문구	<p><b>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li> <li>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13	서초구	<p><b>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li> </ol>
14	성북구	<p><b>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li> </ol>
15	송파구	<p><b>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li> </ol>
16	양천구	<p><b>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li> <li>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의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17	영등포구	<p><b>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li> <li>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18	용산구	<p><b>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li> </ol>
19	은평구	<p><b>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ol>
20	중구	<p><b>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b></p> <p>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li> <li>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li> <li>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li> <li>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li> <li>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li> <li>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li> </ol>